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홍지광 의원)

의안 번호	25-52
----------	-------

발의년월일 : 2025. 5.

발 의 자 : 홍지광, 권영숙, 권인순,
남해석, 안미자, 한선미

1. 개정이유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물품에 ‘식수’를 추가하여, 폭염으로 인한 탈수나 열사병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폭염저감조치 물품에 ‘식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폭염 피해 예방 지원 사업 물품에 ‘식수’를 추가함(안 제7조)

3. 관계법령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2)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5. 5. 15. ~ 5.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선풍기·에어컨·열음조끼·쿨토시”를 “선풍기·에어컨·열음조끼·쿨토시·식수”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위한 냉방용품”을 “위한 식수, 냉방용품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5.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u> 등 냉방용품 지원	나. <u>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식수</u>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①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폭염 피해 예방을 <u>위한 냉방용품</u> 지원 사업	5. ----- <u>위한 식수, 냉방용품 등</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7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7조제1항제5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추진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 이순아
연 락 처	010-3153-1645